

우리나라 生命保險會社의 契約者 配當制度의 現況 및 發展方向

金 元 顯
(大韓生命 理事・代表計理人)

◀ 目 次 ▶

- I. 序 論
- II. 生命保險會社의 利益의 本質과 契約者 配當의 意義
 - 1. 生命保險會社의 利益의 本質
 - 2. 契約者配當의 意義
- III.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契約者 配當制度
 - 1. 利源別 配當
 - 2. 保險年度式 配當
 - 3. 配當金의 支給方法
- IV. 向後 우리나라 契約者 配當制度의 發展 方向
 - 1. 保險制度 特性確立을 爲한 契約者 配當의 定着・安定化
 - 2. 成熟된 契約者 配當의 發展方向(長期 發展方向)
- V. 契約者 配當制度의 發展을 위한 制度改 善
 - 1. 配當例示
 - 2. 責任準備金 積立方法 再檢討
- VI. 結 論
 - 1. 概算保險料 精算制度로서의 配當制度 定着
 - 2. 競爭配當 基盤 構築과 導入

I. 序 論

生命保險은 쉬운 원리의 個別長期契約이 無數히 모아져서 어렵고 복잡한 사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生命保險의 政策이나 經營에 관한 문제는 원칙에 충실하며, 善意的인 面을 보면서, 지속적인 성실로 임해야 改善과 發展이 가능한 産業分野라고 생각한다. 반면 表出된 問題를 조금씩 해결하려는 노력이 保險制度 自體를 歪曲시키거나 否定하는 경우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契約者 配當制度의 發展을 모색하는 本稿에서는 用語의 定義를 되새겨 정리하고, 그 結果로서 우리나라 契約者 配當制度의 發展 方向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生命保險會社의 利益의 本質과 契約者 配當의 意義

1. 生命保險會社의 利益의 本質

費用과 收益의 發生이 分明한 경우는 이익(Prof-

it)의 認識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란 單純去來에서나 가능할 뿐, 사실상 現代의 高度 設備를 통한 生産 또는 去來에서는 費用, 收益의 認識을 어떻게 하는가 또는 資産, 負債의 評價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利益이 좌우되니, 眞 利益의 의미가 아닌 評價剩餘金(Valuation Surplus)이라 해야 할 것이다.

生命保險會社의 利益은 더우기 責任準備金의 評價라는 負債의 認識方法에 따라 利益의 規模가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의 利益은 Profit가 아니라, Valuation Surplus로 理解되어야 한다.

2. 契約者配當의 意義

生命保險會社의 營業保險料는 산출기초율의 一定한 假定下에 收支相等의 원리에 의하여 決定되 어지나 契約의 長期性에 따라 安定性을 追求하게 되어 算出基礎가 현실보다 상당히 安全한 方向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周知의 事實이다.

따라서, 事業의 영위결과 利益(잉여금)의 發生이 당연히 기대되며, 이러한 意味의 剩餘金을 契約者에게 반환·정산하는 것은 또한 當然하다고 본다. 이것이 概算保險料의 精算還給을 契約者 配當의 가장 중요한 意味로 보는 理由이다.

以外에 正常的인 經營結果의 水準을 超過하는 效率인 經營의 結果로 얻은 利益(經營成果益)은 기본적으로 會社의 몫이다. 이러한 經營成果益을 계약자에 추가배분하는 것은 契約者配當의 적은 一部分이다.

經營成果配當은 生命保險의 相互主義的 見地에서 이거나, 現代의 Marketing 概念에서 價格競爭次元이건 會社의 自律部分으로 會社間 競爭이 예

상되는 項目이다.

III.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契約者 配當 制度

우리나라의 契約者 配當은 '65. 10. 1부터 '72. 8. 1까지 一時的으로 金利補償 目的으로 시행된 特別配當, '79. 1. 1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公金利로서 예정이율의 精算을 한다고 볼 수 있는 確定配當이 있었으며, 경험생명표의 導入에 따른 死亡率 精算意味의 精算配當이 83년에 실시된 바 있기는 하였으나, 契約者 配當의 가장 중요한 意味가 概算保險料의 精算還給이라고 본다면 配當의 實施가 너무 늦어 保險制度를 國民에게 公正적으로 認識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87회계년도부터 실시된 現행의 契約者 配當制度를 概括해 보면 다소 不完全하지만 保險年度式·利源別 配當으로 규정할 수 있다.

1. 利源別 配當

消費者가 수용할 수 있는 價格의 水準을 假定할 때, 그러한 水準의 價格으로 保險料를 정산하고, 總括的 差額을 환급하는 것을 總額配當으로 定義한다면, 數理的 分析으로 公平性을 提高하여 보다 더 合理的인 保險料의 精算을 도모하려는 것이 利源別 配當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生命保險의 初期는 어려운 經營 諸 條件과 경영자체의 契約者 지향적이지 못한 점으로 인하여 契約者 配當의 실시가 지연되어 왔으나, 契約者 配當의 실시가 보험산업의 成長發展에 必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總額的인 缺損 決算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배당을 強制 실시키

위하여 利益의 發生이 確實한 利差, 死差益의 配當을 基本으로 配當制度를 '87회계년도부터 도입· 실시하게 되었다. 利源別 配當內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利差配當
 ㄱ) 確定配當

市中銀行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한 예정이율의 1次 精算配當이다.

ㄴ) 利差配當

毎年 재무부장관이 承認하는 利差配當 基準率 ('91 회계년도 : 10%~12%)에 의한 예정이율의 2次 精算이며 대부분의 회사가 최고율에 의하여 利差配當을 실시하고 있다.

〈표-1〉 年度別 利差配當

구 분	'87	'88	'89	'90	'91
대 상 계 약	2년이상 유지된 계약	2년이상 유지된 계약	2년이상 유지된 계약	2년이상 유지된 계약	2년이상 유지된 계약
배 당 금 계 산 기 준	사업년도말 해약식 준비금	사업년도말 해약식 준비금	보험년도말 해약식 준비금	보험년도말 해약식 준비금	보험년도말 해약식 준비금
배 당 기 준 율	12%	12%	12%	10~12%	10~12%

ㄷ) 長期維持 特別配當
 長期投資收益(평가익, 매각익)의 配分의 概念에서 출발, 長期維持 契約을 우대하는 配當이라는

面에서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으나, 最近의 부동산 경기하락, 證市의 不安 등을 감안할 때 再檢討의 必要性이 있다 하겠다.

〈표-2〉 年度別 長期維持 特別配當

구 분	'87	'88	'89	'90	'91
대 상 계 약	6년이상 유지된 계약	6년이상 유지된 계약	6년이상 유지된 계약	6년이상 유지된 계약	6년이상 유지된 계약
배 당 금 계 산 기 준	사업년도말 해약식 준비금	사업년도말 해약식 준비금	보험년도말 해약식 준비금	보험년도말 해약식 준비금	보험년도말 해약식 준비금
배 당 기 준 율	$(t-5) \times 1.0\%$	$1\% + (t-6) \times 0.2\%$	$1\% + (t-6) \times 0.2\%$	$1\% + (t-6) \times 0.2\%$	$1\% + (t-6) \times 0.2\%$

※ t: 경과년도

2) 死差配當

보험료 산출시에 적용한 사망율과 실제사망발생율('91會計年度: 2회 경험사망율의 78~88%)과의差異에서發生한 自然危險保險料의 정산이다.

配當指針에서 實際死亡發生率을 결정할 때 總額

의인 死差益의 규모를 감안하면서 總額死差益의 構成要素의 分析에 소홀하여 死差益은 과다하게 計上되는 傾向이 있다. 즉, 危險種類別, 經過期間別 등 死差益의 發生原因을 엄밀분석하지 않으므로 死差益은 特定 契約者群에게 過多配當되는 傾向이 있다.

〈표-3〉

年度別 死差配當

구 분	'84	'85	'86	'87	'88	'89	'90	'91
대 상 제 약	2년이상 유지계약	2년이상 유지계약	2년이상 유지계약	1년이상 유지계약	1년이상 유지계약	1년이상 유지계약	1년이상 유지계약	1년이상 유지계약
배 당 금 계 산 기 준	위험보험료	'85간이 경험생명표	'85간이 경험생명표	제1회 경험생명표	제1회 경험생명표	제1회 경험생명표	제1회 경험생명표	제2회 경험생명표
배 당 기 준 율	30%	15%	15%	20%	25%	30%	20~37%	12~22%

3) 費差配當

우리나라의 生命保險會社는 아직 費差配當을 實施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82. 6.28 金利引下措置가 이루어져 保險料의 급격한 引上이 불가피했던 때 보험료의 인상폭을 무리하게 예정사업비율의 引下로 흡수하였으며, 이후부터 구조적인 費差損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규모의 增大에 의하여 上位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91會計年度부터 綜合費差益을 實現하고 있으나 維持費에서의 費差損은 全生命保險會社의 共通事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부터 低率의 예정사업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保險料의 精算概念에서의 費差配當은 不要하다 할 수 있다.

2. 保險年度式 配當

會計年度式 配當方式은 每年의 決算結果에 의한 成果配當이 강조된다면 보험년도식 배당은 회계년도별 이익규모의 변화에 불구하고, 장기추이에 따른 배당의 안정성, 향상성의 속성을 전지하며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保險料 精算概念이 重視되는 배당금의 計上方式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會計年度式으로 출발하였다가 '89 會計年度 配當부터 保險年度式으로 變更 시행하여 오고 있다.

3. 配當金の 支給方法

配當金の 支給方法으로 現金支給, 保險料相計, 積立後 소멸시 적립원리 합계액 支給方法(이하 “부리적립방법”이라 함) 및 원보험의 一時納契約

追加加入方法(이하 “보험금 증액방법”이라 함)이 있다.

保險料 相計方法이 소멸성 보장보험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配當金 支給方法이라 할 수 있으며, 附利積立方法은 전통적 양로보험의 사망보험금 또는 만기보험금의 충실화 또는 價値保全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保險金增額方法은 保險金의 充實化 내지 價値保全의 目的은 附利積立方法과 같으나, 年金 등 보험금의 지급방법이 다양한 보험종류에서도 효과적이며, 배당금에 의하여 증액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다시 배당금의 계산 등 보험 Service를 행하는 더욱 발전된 배당금 지급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이태리, 벨기에 등의 유럽 보험선진국에서는 배당금 지급방법으로 保險金 增額方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保險本來의 目的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現金支給方法이 가장 一般化되어 있으나, 이는 保險認識의 改善을 도모함과 새로운 追加 新契約의 획득에 社會 활용하려는 營業指向의인 의도라고 볼 수 있으며, 제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IV. 向後 우리나라 契約者 配當制度의 發展方向

1. 保險制度 特性確立을 爲한 契約者 配當의 定着·安定化

生命保險의 數理的 특수성에 基因하여 契約者配當의 一次的 意味는 概算 保險料의 精算還給이라는 주장에는 異論이 없을 것이다. 어느 水準의 保

險料로 精算할 것인가는 간단한 問題는 아니겠으나, 保險料가 豫定基礎率(예정위험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에 의하여 決定되며, 이러한 豫定基礎率을 長期的인 豫상이 아닌 지난 기간의 경제·사회·환경을 분석하여 적정수준을 判定한은 그리 어려운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保險料 精算概念의 契約者 配當은 保險者의 義務라고 보여 진다.

現在 우리나라의 契約者配當의 水準이 保險者의 義務라 볼 수 있는 概算保險料의 精算 還給의 水準과 비교하여 過不足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保險制度가 國民의 신뢰를 받는 制度로 발전하기 위한 基礎的인 要素는 適正價格의 共感이며, 保險의 價格은 契約者配當으로 完成되어 지므로 本稿에서는 現在의 契約者 配當制度의 내용을 검토하고, 發展方向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保險年度式 利源別 配當”으로 要約되는 現行의 우리나라 配當方式은 保險料 精算配當의 方向으로 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짐으로 利源別 配當의 다소 補完方向에서 檢討한다.

1) 利差配當

現在 確定配當, 利差配當 및 長期維持特別配當으로 區分되어 있는 것을 單一化하여, 配當의 便利性을 圖謨해야 한다. 確定配當을 利差配當에 흡수시키고, 長期維持特別配當은 保險料精算의 概念에서는 再檢討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現在의 利差配當 基準利率(12%)은 회사의 부담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져 소폭 下向調整이 요청된다고 보여지나 塔금용권의 受信金利를 본다면 國民의 共感이란 側面에서 쉽게 결론짓기는 힘들 것이다.

2) 死差配當

上記 현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總額死差益의 一定額을 處分하려는데 目的을 두고 死差配當率이 결정됨으로써 초기 많은 失效・解約者의 危險保險料가 유지계약자에게 추가 배분됨으로써 死差配當率은 다소 높은 듯하다.

경과기간별, 보험집단별, 위험종류별로 이익의 발생을 재검토하여 배당수준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총액적인 利益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 하더라도 고율의 배당에 의하여 契約者群間에 所得의 移轉效果가 발생한다면 民營保險의 基本原理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생각되어진다.

3) 費差配當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경우 費差益은 적어도 保險料의 精算概念에서는 不要한 듯 하다고 위에서 言及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나라 生命保險制度의 하나의 큰 矛盾과 그 改善 方案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소위 解約還給金의 短期償却式의 制度로서 이 방식에 의하여 우리나라 生命保險會社는 신계약비의 負擔에서 契約者間에 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즉, 7년 이상 維持된 後 解約하는 契約者는 豫定된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本人이 負擔해야 할 新契約費 상각액 相當額의 追加支給을 받게 된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강제 단기상각식의 해약 환급금은 신계약비의 일정액을 되돌려 주었다가 상각기간이후 다시 떼앗는 合理性이 결여된 制度이다.

“純保行政”으로 지칭되는 準備金 積立方法과 解約還給金의 강제적인 단기상각식의 方法은 合理的인 보험의 經營과 감독을 위해 조속히 재검토 시

정되어야 한다. 配當制度의 定着, 安定化를 위한 安定的 利益確保方案으로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의 재검토 및 配當制度의 理解擴大를 위한 提案으로 配當例示制의 合理的 定着方案에 대하여 뒤에 다시 논하기로 한다.

2. 成熟된 契約者配當의 發展方向(長期發展方向)

競爭配當制度로의 發展을 자주 듣게 되나, 이는 政府主導의인 改善이라기 보다는 保險會社 自律經營의 部分이라고 보며,

- 1) 概算保險料 精算概念의 配當 定着
- 2) 配當에 대한 國民의 理解 擴大
- 3) 事前 料率監督, 全件 監督方法에서 事後 重點監督方法으로 전환
- 4) 保險社 內部監督制度의 充實化

—保險計理人, 監査의 機能 發展・擴大

등의 政策課題의 發展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公正한 價格으로의 精算위에 經營成果의 競爭配當은 보험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될 것이다.

V. 契約者 配當制度의 發展을 위한 制度改善

1. 配當例示

1) 必要性

保險은 長期契約이라는 特性때문에 保險料의 決定이 특히 保守의이며 당연히 保險料의 精算이 契約者 配當의 形式으로 이루어짐은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保險商品의 販賣時 配當制度를 具體的

으로 說明하지 않는 것은 마치 價格없이 물건을 파는 격이 된다. 보험의 價格이 장래의 경제·사회 환경의 不安에 起因하여 보수적으로 결정되었다면 현재의 事件이 향후 계속됨을 前提로 한 價格은 바로 現在の 보험료와 現在水準의 配當金으로 規定될 수 있다.

현행 配當率에 의한 향후의 配當金 豫想額을 보험금부, 보험료와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適正價格을 契約者가 共感하고, 이로써 契約이 成立함으로써 진정한 去來가 이루어져야 보험제도의 발전이 기대된다. 配當制度의 發展方向에서 概算保險料의 精算還給概念의 配當을 定着시켜야한다는 주장도 保險去來를 종래 연고계약, 불실택약에서 탈피되도록 制度的 뒷받침을 굳건히 하자는 意圖이다.

2) 우리나라의 關聯規制 法規

ㄱ) 보험업법 제155조(모집문서도화) 제3항

“모집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못한다.”

ㄴ) 公示例規: 보험감독원 소보520-874(91. 8. 20)

3) 配當例示의 日本의 例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155조와 같은 취지의 規制法規가 1931년 商工省令으로 제정된 후 1948년 保險募集取締에 관한 法律(이하 募集法이라 함)로 제정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다만, 法規의 해석에 있어서는 1967년부터 큰 變化가 있었다.

즉, 그 이전에는 法規의 言語的 意味에 充實하

여 配當實績의 형식으로 배당금을 팜플렛에 例示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配當實績이 없는 신종 상품의 경우도 실적배당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예시하도록 허용하였다. “保險에서의 配當은 경영 실적에 의한 배당기준율로 예정기초율에 의한 保險料를 정산하는 것으로써 實績配當率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도 實績 金額과 같이 實績으로 보는데 無理가 없기때문” 이었다.

募集法에서 配當例示 禁止規定은 誇張, 不定話法에 의한 不實 販賣의 禁止에 目的이 있을 뿐, 配當例示 自體의 禁止가 目的이 아님으로 직전년도의 배당율을 기준으로 장래의 배당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實績表示로서 生命保險의 販賣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解釋되고 있다. '92년 6월 보험심의위원회의 답신 “새로운 생명보험의 方向에서는” 현행의 募集法이 상품선택의 유용한 정보제공을 제한하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96년 法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중이다.

保險業界는 法律改正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지난 '92. 6월부터 배당예시에 있어 實績配當率에 의하여 計算한 配當例示에 추가하여 配當率의 변화시 배당금 변화규모를 동시에 설명함으로써 보다 完全한 保險價格 情報를 契約者에게 提供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配當例示 方案

日本의 例가 우리의 配當例示 方向을 提示하고 있다. 現行法規의 解釋으로도 직전년도의 배당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配當率의 변동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정보와 함께 계약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험의 가격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보다 發展的으로는 配當豫想을 法律的으로 許可하여 配當의 변화규모 등에 대한 情報도 提供할 수 있도록 하되, 惡用의 경우를 예규에 規制하고 監督하며, 보험회사의 責任을 強化해야 할 것이다.

2. 責任準備金 積立方法 再檢討

1) 保險會社の 責任準備金의 意義

責任準備金의 數理的 定義는 收支期望值이다. 保險은 全保險期間에 걸쳐서 收支相等의 原則에 의하여 관리되지만, 收入은 保險料 納入期間에 걸쳐 均衡하게 實顯되고 支出은 보험기간말에 치우침으로써 보험기간중에는 收支의 不均衡이 당연히 예상되며, 이러한 수지불균형이 책임준비금의 본질이라고 보는 定義이다. 法律的으로는 契約上の 價額(Policy Value)으로 定義되며, 保險政策的으로는 보험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基金(Funds)으로 定義된다.

2) 責任準備金의 評價原則

責任準備金은 根本的으로 評價性 負債이다.

保險會社の 支拂能力 確保를 目的으로 合理的方法으로(Solvency under Fair) 준비금은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험회사의 安定性, 支拂能力 確保의 面과 損益의 규모, 契約者 配當水準, 稅制, 民營保險의 역할범위 등의 面을 多角的으로 比較·檢討하여 評價의 基準이 設定되어야 한다.

保守的 思考는 책임을 과장하여 安定性이 클 수 록 좋다는 경향이었으나, 現在의 合理的 思考는 자산과 부채가 合理的으로 평가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均衡思考가 評價原則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3) 責任準備金의 評價方法

ㄱ) 純保險料式 準備金(Net Premium Reserves)

保險料 計算時의 예정이율로 計算한 準備金으로 評價의 彈力性은 없지만 예정기초율의 保守性을 신뢰하는 評價方法으로 보여진다.

平準純保險料式(이것만을 純保險料式으로 分類하는 것은 誤解임), Zillmer 純保險料式, 充足保險料式 準備金 및 現行 우리나라의 소위 解約式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ㄴ) 評價準備金(Modified Reserves)¹⁾

장래의 經營환경을 감안한 별도의 準備金 計算 基礎에 의하여 評價한 準備金으로, 탄력성이 큰 만큼 評價計理人(Valuation Actuary)의 책임이 그만큼 강조되어야 한다.

4) 純保行政의 再檢討—새로운 責任準備金 評價方法의 모색

ㄱ) 檢討方向

생명보험회사의 繼續性의 特性에 미루어 經常的 決算時에는 保險料의 精算還給이 우선 고려되고, 社內留保 역시 合理性에 기인하여 점증적으로 充

1) 初年度 定期式(Full Preliminary Method), Illinois Standard Method, Canadian Method, Comissioner's Method등 英美에서 사용되는 Modified Reserves를 評價準備金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英美의 경우 준비금의 評價時 보험료와 별도의 산출 기초가 적용되며, 經營환경의 예측을 重視한다는 面을 考慮하였기 때문이다.

實化하도록 책임준비금 평가의 彈力性を 늘리는 方向이 검토되고 있다.

ㄴ) 새로운 責任準備金 評價方法

評價準備金으로의 전환으로 준비금 평가를 위한 算出基礎—특히 예정이율의 可變化를 도모(보험료 산출 예정이율 $\pm 2.5\%$)하고, 준비금의 Funds的 政策概念에 따라 未實現收益 事業費의 이연자산 計上을 通하여 안정적 利益을 실현하고자 한다.²⁾

이러한 制度에는 評價計理人의 經營監督機能의 擴大 및 政府의 合理的 監督體制의 強化가 요구된다. 準備金 評價 산출기초를 經營지표로 엄격히 관리, 감독하여 자의적인 불실결산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연자산은 상각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리라 본다.

VI. 結 論

1. 概算保險料 精算制度로서의 配當制度 定着

'87 會計年度에 와서야 現在의 모습으로 시작된 契約者 配當制度는 계약자 배당의 概算保險料 精算概念에서 볼 때 너무 늦어 保險産業의 質的 發展에 害요인이 되었다. 價格의 精算이란, 營業이 開始되면서 바로 실시되어야 할 命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新設社든 劣勢社든 현재의 配當은 合理的인 水準에서 安定的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準備金의 평가방법의 彈力性を 높이는 方法으로 現在의 純保行政은 근본적인 再檢討가 요구된다. 물론 자산의 잉여가 있어 內部

留保를 充實히 하는 會社의 경우도 合理的인 社内 留保를 위하여 純保行政의 재검토가 要求된다.

保險者의 義務로 規定한 概算保險料 正산환급의 계약자 배당을 定着시키기 위하여 保險社가 純資產을 正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누적결손의 상각에 감독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規制를 強化해야 할 것이다.

配當例示制를 적극 活用하여 보험제도의 이해를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며, 協會 共同 P·R을 통하여 배당예시의 一般的 Negative 정보도 公示하면서 國民一般에게 보험제도를 바르게 認識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競爭配當 基盤 構築과 導入

보험료 正산이 義務配當이라면 經營成果配當은 自律配當이라 할 수 있으며, 必然的으로 競爭配當이 될 것이다. 競爭配當은 自律經營을 前提하며, 保險會社의 自律擴大가 요망된다. 過程監督은 보험계리인의 역할 및 감사제도 등 內務監督制度에 위임하며,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하여도 評價計理人의 권한과 책임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政府는 지금과 같은 過程監督에서 結果監督, 事後·重點監督으로 監督方法을 전환함이 保險社의 競爭力 強化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諸與件의 성숙에 따라 궁극적으로 契約者 配當이 競爭配當으로 發展되리라 본다. 물론 國民의 保險認識 向上에 따라 保險企業도 지금보다는 社會性, 福祉性도 더 강조되고, 營利性에 따른 他産業과 같은 行動原理가 더욱 強調될 것이다.

2) '70年代 준비금 경감조치 참조

負債積立金 認定, $i+3\%$ 의 준비금 계산이율 적용